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가단296503 판결 [사해행위취소의 소]

전 문

원 고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정섭
변 론 종 결 2023. 4. 28.
판 결 선 고 2023. 6. 1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B와 피고 사이에 2022. 10.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B에게 2022. 10.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와 접수 제6084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수출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2020. 6. 26.경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전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액 1,995,000,000원, 보증기한 2021. 6. 25.로 정하여 원고가 무역보험법에 의한 수출신용보증을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소외 B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20. 6. 26.경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D은행에게 신용보증한도 1,995,000,000원, 보증기한 2021. 6. 25.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그 후 보증기한은 2022. 6. 25., 2023. 6. 25.로 각 변경되었다.

3) D은행은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회사에게 위드론수출금융 명목으로 2,100,000,000원을 변제기 2023. 6. 23.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4) 소외 회사는 2022. 9. 16.경 회생으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2. 10. 20. 기준 D은행에 대한 소외 회사의 대출원리금 2,014,056,890원이 남아있었는데, 원고는 같은 날 D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한편 원고는 보증약정에 따른 구상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비용으로 5,386,200원을 지출하였다.

5) 결국 소외 회사,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약정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2,014,056,890원, 채권보전비용 5,386,200원의 합계금 2,019,443,090원 및 그 중 위 대위변제금 2,014,056,890원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2.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연 10%의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6) 그 후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차전363612호로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22. 11. 23.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위 B는 2022. 10. 4.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2. 10.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와 접수 제6084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의 채무초과상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B는 E은행 등의 신용대출로 합계 19,000,000원, F조합 등에 대한 담보대출로 합계 356,835,000원, G카드 등 카드로 합계 7,466,000원, 원고 등에 대한 보증채무 합계 2,006,352,000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여기에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액 317,671,233원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대한민국 명의의 가압류채권 2,234,456,234원 등 채무가 합계 4,941,780,367원에 이르러, B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소유의 다른 4필지 토지의 가액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액수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대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22. 9. 16.경 수출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대위변제금 2,014,056,89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위 채권은 대위변제일인 2022. 10. 20.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에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이 사건 보증약정에 터 잡은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후 원고가 D은행에 소외 회사와 B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그로 인해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고,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B는 이로 인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에 3억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측과 협의한 결과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인바, 그 당시 원고의 채권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 등 B의 채권채무관계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법리와 같이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원고의 채권이 장래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 또한 B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2. 10. 4.에 이르러서야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주식회사 H의 재산이 아닌 B 개인 명의의 재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B의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채무자인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양철한

별지

1.동의건물의표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전유부분의건물의표시 건물의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6층 호 87.152㎡

대지권의표시 토지의표시 :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 140951.3㎡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40951.3분의 55.082

